

2021년 4월 17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21. 4. 19.(월) 10:00 이후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21. 4. 19.(월) 10:00 ~ 2021. 4. 21.(수) 17:00  
방법 :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 ]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21. 5. 6.(목) 11:00 이후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 ②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명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유효로 볼 수 없다.
- ④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문 2】 법인의 대표기관, 이행보조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③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인 법인과 함께 대표기관 개인도 그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 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문 3】 조합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의 해산으로 선임된 청산인에 대하여 조합원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 ②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 ③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하므로,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 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4】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 ④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문 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였던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③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6】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세권 소멸시 목적부동산의 반환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당연히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문 7】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던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문 9】 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②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여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 ④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문10】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문11】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 ③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④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문12】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 ③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④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 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민법 제109조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문14】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②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 ③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15】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는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②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 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문16】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면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④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문17】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
- ③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진다.
- ④ 채무의 이행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문18】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실정법이나 계약을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작용을 하므로, 사적 자치나 계약자유도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③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인정된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관리의 구체,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19】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 ②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든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④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소멸된다.

【문20】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정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에 있으면 되고, 손해발생의 사실 및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과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문21】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없다.
- ③ 원고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심리 결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기각하여야 하고, 변론주의의 원칙상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 ④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주장만 하고 그 이행기로부터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여부는 역수상 명백한 공지의 사실로서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 ③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문23】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주장 참가의 경우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권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제1심에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실제로 상소를 제기하지도 당하지도 않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도 확정성이 차단되고 그에 관한 소송관계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위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편면적 참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독립당사자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2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출자 자신이 작성한 문서 또는 제3자 작성의 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지라고 다투었는데 제출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백지문서를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문서제출자의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③ 문서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면 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자필일 필요는 없으나, 문서작성자의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④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더라도, 서명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어진 경우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문25】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항소취지와 함께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항소인이 취소를 구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② 항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항소권을 포기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제1심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으나,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문38】 소송상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준비서면 등의 제출서면도 공동으로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 본인의 경정권의 대상은 재판상 자백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한하므로 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포기·인낙·화해 같은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 법률상의 의견 등은 본인이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 ㉣ 당해 소송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또는 취소환송되어 다시 원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고, 재심의 소에 있어서도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만 가능하고,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39】 등기관관련 청구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무효사유가 절대적 무효사유(위조 등)이면 원고는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가 절대적 무효임을 주장·증명하면 되나,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착오 등)이면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사유 외에 전등자가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명의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40】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달의 흠은 원칙적으로 이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그 포기나 상실 또는 추인에 의해 치유된다. 그러나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없고 반드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고,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그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는 일단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뒤에 그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송달 할 수 있다.
- ③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도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④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은 모두 발송송달에 의하여 할 수 없다.

【문 1】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갔으나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한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④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문 2】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기망자가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그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행위자에 의해 제시된 서면에 서명·날인한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의 경우, 작성명의인인 피기망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문서의 의미를 알지 못한 피기망자로서는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그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②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 3】 문서에 관한 죄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
- ②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실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 ④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 4】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④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출소일을 기준으로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 5】 절도죄 및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강도범인이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날치기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에는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문 6】 강제추행죄 내지 공연음란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행위들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음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행위들을 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더 나아가서 위 행위들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 ②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

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④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다만,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7】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범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범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범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갑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고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를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 침대, 부항기 및 부항침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 본 다음 양손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한편,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 또는 25,000원을 받은 경우, 부항 시술행위가 수지침과 유사하게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도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8】 방화에 관한 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 소유의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시멘트벽을 일부 그을린 경우, 위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할 수 없다.
- ②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피고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써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이 '무주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문 9】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10】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②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면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문11】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가 선임 혹은 선정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 ③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 ④ 재판장은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위 의견 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문12】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되거나,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문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할 수 없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철회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구술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377조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 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문15】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하며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 ② 재판장등은 재판사정에 비추어 수소법원 외의 장소에 설치된 증언실에서 영상신문을 실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전에도 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재판장등은 증언실의 위치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증인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소법원에 증계시설이 설치된 형사법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법정을 활용하여 영상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갑 등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 고 볼 여지가 있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고,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함에 있어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 주고, 나머지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일부 기각 취지 부분 등)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피압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압수자에게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했을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문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지 않으므로 이때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반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반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반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③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확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문19】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고, 정식재판 청구는 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공소장 부분의 송달이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할 필요가 없다.
- ③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것은 형중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어느 특정의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다시 정식의 소환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
- ③ 송달불능이나 그에 대한 주소보정요구가 주효하지 못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등에 대한 소재조사촉탁(소재탐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소재탐지촉탁서는 재판장 결재 후 원본은 관할경찰서로 송달하고 부분 또는 사본은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 ④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그 기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여유있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이 없어도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되고,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 까지 같음)

-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차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월단위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으로 정하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키며,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더라도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각각의 점포의 보증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여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0. 9. 29. 이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문 2】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인수 또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가압류, 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는다.
- ② 저당권설정등기, 담보가등기, 가처분등기는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그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③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이는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④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문 3】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이므로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전부명령 확정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고,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 ②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부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때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 4】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도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 ③ 강제집행은 정지결정 등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 ④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매각의 불허를 구하지 아니한 이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위 서류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없어 항고기간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문 5】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과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이미 지출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
- ③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 ④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문 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 ③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문 7】 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행증서는 그 자체로 명확해야 하므로 조건부, 기한부 또는 상환급부의무에 관하여는 작성할 수 없다.
- ② 집행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어야 하고, 이는 소송행위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추인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며, 이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 ④ 집행증서에 적힌 청구권의 성립원인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8】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 등이 있는데, 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관을 상대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법원은 집행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판 전에 집행정지(이른바 잠정처분)를 할 수 있다.
- ④ 항고권자는 불복을 신청할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인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여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부존재 여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문10】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에 대한 보전명령절차에서 보전처분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보전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
- ② 보전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상법 제407조에 의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당해 이사 개인에게는 채무자의 적격이 없다고 한다.
-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문11】 부동산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②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③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문1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 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 ③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13】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은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인도명령 발령 후 자동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인도명령을 받아야 한다.
- ②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발생한다.
-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④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운행허가에는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문14】 아래의 표는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부동산 경매절차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될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를 다음 중 고르시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1. 8. 가압류</li> <li>■ 2020. 3. 16.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li> <li>■ 2020. 4. 26. 담보가등기</li> <li>■ 2020. 5. 13. 근저당권설정</li> <li>■ 2020. 12. 23. 경매개시결정</li> </ul> |
|---|

- ① 2020. 1. 8. 가압류
- ② 2020. 3. 16.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③ 2020. 4. 26. 담보가등기
- ④ 2020. 5. 13. 근저당권설정

【문15】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문16】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이행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동시에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의 배당은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 ③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전부 지급된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문17】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일부 골조공사만 완공된 후 중단되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이 건축되고 있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② 조합원의 지분(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은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③ 토지 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명인방문을 갖춘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
- ④ 건물의 일부가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이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낙찰자는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18】 보전처분 절차에 있어서 담보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담보취소결정이 발령된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령된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 ② 보전처분 후 집행기간의 경과,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의 경우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의 취소절차 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소송의 완결은 보전소송절차가 완결되어 더 이상 손해액이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하며, 본안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본안소송도 완결되어야 한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19】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있다.
- ②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③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이사 등이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문20】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중기 이후에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선행의 강제경매절차만으로 무언여 여부(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
- ④ 선행 경매사건이 있음에도 후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선행 경매사건과 별개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그에 따라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문 1】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등기신청은 해당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교합시가 아닌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 ②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수리하여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동법 제29조 제1호, 제2호 뿐만 아니라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도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③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첨부서면이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 ④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 2】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함께 그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2개 이상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르게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 단수처리의 결과로 인하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소 다르게 정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나 보전처분등기 및 부인등기는 할 수 있다.
- ②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과 공동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의 권리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 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 ④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그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5】 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한다.
- ②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 ③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문 6】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등기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 현재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당시에 교부 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의 확인조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공증을 받아 제출 할 수 있다.
- ④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관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 7】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과하시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원인이 신탁입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압류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대상통지를 마친 상태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문 8】 처분제한 등기 촉탁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여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만을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한다.
- ④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시결정등기의 촉탁정보에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으로 표시하여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문 9】 농지 취득과 관련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현황주의가 일반적이다.
- ③ 도시지역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 ④ 중증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해당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중증이 그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중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0】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다.
- ②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원신탁)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갑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탁자가 신탁 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채권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있다.
- ④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11】 다음 <보기> 중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甲의 가압류결정(채무자 乙)을 송달받은 乙이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을 하였고 이 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ㄴ.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금 100만 원)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 乙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이 공탁소에 각 도달한 경우

ㄷ.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금 100만 원)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00만 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乙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00만 원)이 공탁소에 각 도달한 경우

ㄹ.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금 100만 원)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50만 원),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00만 원)이 순차적으로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문1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2천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1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② 공탁관은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1천만 원)통지가 공탁소에 도달하고, 고양시가 추심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관은 이에 응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위 공탁이 성립한 후 을이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 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 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13】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명령에 해방공탁금의 기재는 의무이다.
- ②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는 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결정에서 甲, 乙, 丙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1억원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甲, 乙이 자신들의 상속채무액만큼만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
-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14】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별도 특약은 없음)

- ① 판결의 주문에 반대급부의 이행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면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 ②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인 공탁자이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 ③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 ④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이 된 경우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더라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담보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존재하므로 공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압류해방공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공탁자가 출급청구 시 공탁서를 첨부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가압류해방공탁 이후 회수청구 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는 착오공탁 증명서면에 해당한다.
-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탁자는 공탁서를 첨부해서 회수청구하여야 한다.

【문16】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양도금지특약 있음) 3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와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천만 원)을 각 송달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乙과 丙 중 1인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②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甲에게 먼저 송달된 사실이 공탁원인사실란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탁관은 甲의 혼합공탁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③ 같은 위 혼합공탁을 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즉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법원도 그에 따라 배당절차를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 ④ 丙은 乙을 피고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만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문17】 다음 <보기> 중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이 미질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ㄱ.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가압류 담보공탁이 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  |
| 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
| ㄷ.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이 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소송비용  |
| ㄹ.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액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문18】 공탁관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접수된 압류명령서는 제외한다.
- ② 공탁관의 처분 중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탁관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사건 중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청구를 인가해서는 안된다.

【문19】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천만 원을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전액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가 공탁소에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만약 양도통지서에 양도인 乙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乙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청구 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 ③ ‘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가 공탁관에게 도달되었다면 丙이 출급청구 하기 전이라도 甲은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유효하게 丙에게 양도된 후라도 丙이 출급청구를 하기 전에 乙의 채권자들에 의한 다수의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송달되어 집행채권액의 합계가 공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20】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결 당시 토지소유자인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가 아닌 乙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시기 전에 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승계사실을 증명하고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수용시기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인 乙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수용시기 전에 乙이 甲을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처분을 하였다면 수용시기가 지난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乙은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수용시기 전에 甲소유 토지를 매수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했지만 수용개시 후 甲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그 양도사실을 증명하고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4월 17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21. 4. 19.(월) 10:00 이후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21. 4. 19.(월) 10:00 ~ 2021. 4. 21.(수) 17:00  
방법 :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 ]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21. 5. 6.(목) 11:00 이후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 ]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조합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조합의 해산으로 선임된 청산인에 대하여 조합원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 ②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 ③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하므로,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 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2】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의사표시는 침해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 ④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문 3】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 ②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실령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유효로 볼 수 없다.
- ④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문 4】 법인의 대표기관, 이행보조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③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인 법인과 함께 대표기관 개인도 그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문 5】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던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문 6】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②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여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 ④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문 7】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문 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였던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행위를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③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9】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세권 소멸시 목적부동산의 반환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당연히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문10】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 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민법 제109조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문12】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입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②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 ③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13】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 ③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④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문14】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 ③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이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④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실정법이나 계약을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작용을 하므로, 사적 자치나 계약자유도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③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인정된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16】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 ②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④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소멸된다.

【문17】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에는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②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 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이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이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문18】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후 공탁물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면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④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문19】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
- ③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진다.
- ④ 채무의 이행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문20】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정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에 있으면 되고, 손해발생의 사실 및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과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문21】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없다.
- ③ 원고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심리 결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기각하여야 하고, 변론주의의 원칙상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 ④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의 이행기에 관한 주장만 하고 그 이행기로부터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의 도과 여부는 역수상 명백한 공지의 사실로서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 ③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문23】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주장 참가의 경우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권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제1심에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실제로 상소를 제기하지도 당하지도 않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도 확정성이 차단되고 그에 관한 소송관계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위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편면적 참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독립당사자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2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출자 자신이 작성한 문서 또는 제3자 작성의 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지라고 다투었는데 제출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백지문서를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문서제출자의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③ 문서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면 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자필일 필요는 없으나, 문서작성자의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④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더라도, 서명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어진 경우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문25】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항소취지와 함께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항소인이 취소를 구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② 항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항소권을 포기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제1심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으나,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문32】 화해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변론준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
-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기판력을 가지고, 그 기판력을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 ㉣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33】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무능력자 본인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결정을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데 대하여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 ③ “증인대동”의 취지가 기재된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에 증인 명의의 여비포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인의 증인대동 여부와 상관없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 현출절차는 법원이 서면증언의 도착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되, 신청한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한다.

【문34】 전자소송의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소송 동의는 개별사용자별로 하여야 하고, 등록한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해도 소송대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② 분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마찬가지로 보전처분 신청사건 등 기본이 되는 사건에서의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이의, 취소사건 등에도 미친다.
- ③ 추완상소 또는 재심이 제기된 경우, 그 추완상소나 재심이 적법하더라도 상소심이나 재심에서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원칙적으로 상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이 유지된다.

【문35】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의 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합산의 법칙을 적용하되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②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와 동일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지급청구의 반소의 경우, 반소장에는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심급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불법행위에 기하여 1억 5,000만 원(적극적 손해 1억 원과 소극적 손해 5,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가 적극적 손해 1억 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환급사유가 되나, 소극적 손해 중 3,000만 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서 국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나, 국가가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36】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 지상권물철거, 퇴거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토지소유사실, 피고의 토지점유사실인데,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 ②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 ③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 ④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문37】 변론의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바뀌었다라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 ② 재심사건의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변론의 갱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판결선고기일에 법관이 바뀐 때에는 변론의 갱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④ 지난 기일까지 사이에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바뀐 후의 기일에 변론이 연기되는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에 변론갱신의 기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문38】 등기관련청구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무효사유가 절대적 무효사유(위조 등)이면 원고는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가 절대적 무효임을 주장·증명하면 되나,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착오 등)이면 첫 번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사유 외에 전득자가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명의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39】 소송상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고,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소제기가 있어야 하고, 준비서면 등의 제출서면도 공동으로 명의를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 본인의 경정권의 대상은 재판상 자백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한하므로 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포기·인낙·화해 같은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 법률상의 의견 등은 본인이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 ㉣ 당해 소송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또는 취소환송되어 다시 원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고, 재심의 소에 있어서도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만 가능하고,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40】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달의 흠은 원칙적으로 이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그 포기나 상실 또는 추인에 의해 치유된다. 그러나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없고 반드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고,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그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는 일단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뒤에 그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송달 할 수 있다.
- ③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도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④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은 모두 발송송달에 의하여 할 수 없다.

【문 1】 문서에 관한 죄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
- ②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실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 ④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 2】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④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출소일을 기준으로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 3】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갔으나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한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④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성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문 4】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기망자가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그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행위자에 의해 제시된 서면에 서명·날인한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의 경우, 작성명의인인 피기망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문서의 의미를 알지 못한 피기망자로서는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그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②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 5】 절도죄 및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강도범인이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날치기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에는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문 6】 강제추행죄 내지 공연음란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행위들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음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행위들을 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더 나아가서 위 행위들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 ②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

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④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다만,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7】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범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범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범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갑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고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를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 침대, 부항기 및 부항침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 본 다음 양손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한편,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 또는 25,000원을 받은 경우, 부항 시술행위가 수지침과 유사하게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도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8】 방화에 관한 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 소유의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시멘트벽을 일부 그을린 경우, 위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할 수 없다.
- ②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피고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이 '무주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문 9】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10】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②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면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문11】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가 선임 혹은 선정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 ③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 ④ 재판장은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위 의견 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철회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구술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377조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 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문13】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하며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 ② 재판장등은 재판사정에 비추어 수소법원 외의 장소에 설치된 증인실에서 영상신문을 실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전에도 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재판장등은 증인실의 위치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증인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소법원에 중계시설이 설치된 형사법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법정을 활용하여 영상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갑 등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 고 볼 여지가 있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고,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되거나,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심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할 수 없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지 않으므로 이때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문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함에 있어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 주고, 나머지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일부 기각 취지 부분 등)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피압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위에서 본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압수자에게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했을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문18】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고, 정식재판 청구는 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공소장 부분의 송달이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할 필요가 없다.
- ③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것은 형중 상항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③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확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어느 특정의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다시 정식의 소환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
- ③ 송달불능이나 그에 대한 주소보정요구가 주효하지 못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등에 대한 소재조사촉탁(소재탐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소재탐지촉탁서는 재판장 결재 후 원본은 관할경찰서로 송달하고 부분 또는 사본은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 ④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그 기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여유있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이 없어도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되고,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문 1】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이므로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전부명령 확정시까지의 부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고,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 ②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③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부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약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때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 2】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보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도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 ③ 강제집행은 정지결정 등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 ④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보'이 제출되더라도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매각의 불허를 구하지 아니한 이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위 서류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없어 항고기간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차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 보증금 이외에 차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월단위 차입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으로 정하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키며,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임차인이 수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더라도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각각의 점포의 보증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여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0. 9. 29. 이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입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입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문 4】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인수 또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가압류, 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는다.
- ② 저당권설정등기, 담보가등기, 가처분등기는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그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③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이는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④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문 5】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 등이 있는데, 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관을 상대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법원은 집행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판 전에 집행정지(이른바 잠정처분)를 할 수 있다.
- ④ 항고권자는 불복을 신청할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인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여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부존재 여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즉시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문 7】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에 대한 보전명령절차에서 보전처분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보전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
- ② 보전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상법 제407조에 의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당해 이사 개인에게는 채무자의 직격이 없다고 한다.
-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문 8】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이미 지출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
- ③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 ④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문 9】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 ③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문10】 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행증서는 그 자체로 명확해야 하므로 조건부, 기한부 또는 상환급부의무에 관하여는 작성할 수 없다.
- ② 집행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어야 하고, 이는 소송행위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추인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며, 이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 ④ 집행증서에 적힌 청구권의 성립원인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11】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은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인도명령 발령 후 자동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인도명령을 받아야 한다.
- ②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발생한다.
- ③ 강제경매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④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운행허가에는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문12】 아래의 표는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부동산 경매절차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될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를 다음 중 고르시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1. 8. 가압류</li> <li>■ 2020. 3. 16.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li> <li>■ 2020. 4. 26. 담보가등기</li> <li>■ 2020. 5. 13. 근저당권설정</li> <li>■ 2020. 12. 23. 경매개시결정</li> </ul> |
|---|

- ① 2020. 1. 8. 가압류
- ② 2020. 3. 16.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③ 2020. 4. 26. 담보가등기
- ④ 2020. 5. 13. 근저당권설정

【문13】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문14】 부동산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②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③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문1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 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 ③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의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16】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이행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동시에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의 배당은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 ③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전부 지급된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문17】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일부 골조공사만 완공된 후 중단되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이 건축되고 있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② 조합원의 지분(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은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③ 토지 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명인방문을 갖춘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
- ④ 건물의 일부가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이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낙찰자는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18】 보전처분 절차에 있어서 담보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담보취소결정이 발령된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령된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 ② 보전처분 후 집행기간의 경과,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의 경우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의 취소절차 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소송의 완결은 보전소송절차가 완결되어 더 이상 손해액이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하며, 본안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본안소송도 완결되어야 한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반야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19】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고 있다.
- ②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③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이사 등이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문20】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중기 이후에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선행의 강제경매절차만으로 무언여 여부(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 ④ 선행 경매사건이 있음에도 후행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선행 경매사건과 별개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그에 따라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문 1】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 20]까지 같음)

- 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 ④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그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2】 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한다.
- ②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에 대한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 ③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문 3】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등기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 현재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당시에 교부 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의 확인조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 ④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 4】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은 해당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교합시가 아닌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 ②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수리하여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 동법 제29조 제1호, 제2호 뿐만 아니라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도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③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첨부서면이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 ④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이 권리에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다더라도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에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 5】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함께 그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2개 이상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르게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 단수처리의 결과로 인하여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소 다르게 정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 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나 보전처분등기 및 부인등기는 할 수 있다.
- ②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과 공동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파산관재인 의 인감증명은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의 권리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 7】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과하시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원인이 신탁입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압류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대상통지를 마친 상태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문 8】 처분제한 등기 촉탁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여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만을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한다.
- ④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시결정등기의 촉탁정보에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으로 표시하여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문 9】 농지 취득과 관련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현황주의가 일반적이다.
- ③ 도시지역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
- ④ 중증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해당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중증이 그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중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0】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다.
- ②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원신탁)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갑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탁자가 신탁 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채권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있다.
- ④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11】 다음 <보기> 중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가. 甲의 가압류결정(채무자 乙)을 송달받은 乙이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을 하였고 이 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
| 나.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금 100만 원)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 乙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이 공탁소에 각 도달한 경우                 |
| 다.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금 100만 원)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00만 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乙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00만 원)이 공탁소에 각 도달한 경우 |
| 라.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금 100만 원)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50만 원),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00만 원)이 순차적으로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

- ① 가, 나
- ② 가, 라
- ③ 다, 르
- ④ 나, 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담보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존재하므로 공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압류해방공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공탁자가 출급청구 시 공탁서를 첨부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가압류해방공탁 이후 회수청구 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는 착오공탁 증명서면에 해당한다.
-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탁자는 공탁서를 첨부해서 회수청구하여야 한다.

【문13】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양도금지특약 있음) 3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재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와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천만 원)을 각 송달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乙과 丙 중 1인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②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甲에게 먼저 송달된 사실이 공탁원인사실란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탁관은 甲의 혼합공탁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③ 갑은 위 혼합공탁을 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즉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법원도 그에 따라 배당절차를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 ④ 丙은 乙을 피고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만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문14】 다음 <보기> 중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이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ㄱ.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가압류 담보공탁이 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  |
| 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
| ㄷ.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이 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소송비용  |
| ㄹ.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액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문15】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2천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1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 ② 공탁관은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1천만 원)통지가 공탁소에 도달하고, 고양시가 추심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관은 이에 응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압류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 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전액(2천만 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16】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명령에 해방공탁금의 기재는 의무이다.
- ②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는 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결정에서 甲, 乙, 丙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1억원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甲, 乙이 자신들의 상속채무액만큼만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
-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17】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별도 특약은 없음)

- ① 판결의 주문에 반대급부의 이행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면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 ②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인 공탁자이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 ③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 ④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이 된 경우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더라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문18】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천만 원을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전액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가 공탁소에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만약 양도통지서에 양도인 乙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乙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청구 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 ③ ‘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가 공탁관에게 도달되었다면 丙이 출급청구 하기 전이라도 甲은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유효하게 丙에게 양도된 후라도 丙이 출급청구를 하기 전에 乙의 채권자들에 의한 다수의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송달되어 집행채권액의 합계가 공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19】공탁관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접수된 압류명령서는 제외한다.
- ② 공탁관의 처분 중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탁관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사건 중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청구를 인가해서는 안된다.

【문20】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결 당시 토지소유자인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가 아닌 乙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시기 전에 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승계사실을 증명하고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수용시기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인 乙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수용시기 전에 乙이 甲을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처분을 하였다면 수용시기가 지난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乙은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수용시기 전에 甲소유 토지를 매수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했지만 수용개시 후 甲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그 양도사실을 증명하고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4월 17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21. 4. 17.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민 법

【문 1】

甲은 2020. 3. 1. 대부업자인 乙과 사이에 5천만 원을 이자율 월 2%(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률 월 4%, 변제기는 2020. 7. 31.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출계약과 관련해 乙에게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등 제세금과 기타공과금을 甲이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甲은 乙로부터 5천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자마자 乙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대부업계의 관행상 공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乙의 설명을 듣고, 공증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甲은 2020. 3.부터 변제기인 2020. 7.까지 乙에게 5개월에 걸쳐 월 100만 원씩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20. 8. 31.에 1개월분의 지연손해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상황이 더욱 나빠져 2020. 9.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乙은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구성하여 이 사건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별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甲이 변제기에 변제하여야 하는 대여원금은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2. 예상되는 판결의 주문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10. 1. 1.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X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0. 7. 1. 중도금 1억 원, 2010. 12. 31.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 당일 乙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 받고 바로 乙에게 X토지를 인도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문항별로 각각 독립적임)

1.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2021. 1. 1. 甲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가. 甲은 위 소송에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甲의 항변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5점】**

나. 甲은 위 소송에서 잔대금 2억 7,000만 원 및 그 중 중도금 1억 원에 대해서는 2010. 7. 1.부터, 잔금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0.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乙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다. 甲의 항변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10점】**

다. 甲은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X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차입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반소청구의 당부를 설명하시오. **【5점】**

2.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잔금지급기일 이후 乙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한다.

가.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를 실시하시오. **【10점】**

나.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모두 실시하시오. **【10점】**

다.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 乙은 丙에게 X토지를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였다.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 丙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을 모두 실시하시오. **【10점】**

**【문 3】**

甲은 2020. 5.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20. 6. 1.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7억 원은 2020. 9. 1. 지급하기로 하면서, 쌍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2020. 7. 1. 丙에게 위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1.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2. 甲이 乙을 상대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는 금액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021. 4. 17.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 민사소송법

## 【문 1】

甲은 乙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위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아래 각 사안은 별개 사안임)

1.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시기가 乙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 이전일 경우)丙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을 논하시오. [20점]
2.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장부분 송달 전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경우)丙이 위 소송절차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3.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丙은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을 논하시오. [20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서울 거주)은 乙(대구 거주)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소비대차계약서에는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합의가 기재되어 있었다.

(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 **[추가된 사실관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乙이 돈을 갚지 않자,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甲의 소제기는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하는바,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5점]**
2.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丙(서울 거주)에게 양도한 후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丙이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양수금청구의 소를 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과 乙 사이에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어 채권양수인인 丙도 위 합의에 구속되므로 丙의 소제기는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하는바,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 **[추가된 사실관계]** 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돈을 빌린 사람은 乙이 아니라 丙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乙의 주장대로 甲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丙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소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 청구인용판결)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2. **[추가된 사실관계]** 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의 채권자 丙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자 丙, 가압류채무자 甲, 제3채무자 乙)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5점]**

## ■ 이자제한법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간주이자)

- ①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7.25.>

###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 제8조(벌칙)

-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7.25.]

###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11.7>

부칙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당해 위탁계약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첨

-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3.3.]

###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 ② 삭제 <2012.12.11>  
[제목개정 2012.12.11.]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이자율의 제한)

- ① 삭제 <2017.8.29>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11.7>
-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11.7>
-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 1. 담보권 설정비용
  -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5.21>  
[전문개정 2014.4.1.]

2021년 4월 17일 시행

#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21. 4. 17.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乙이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인 액면 1억 원의 수표를 乙로부터 건네 받았다. 당시 乙은 위 수표가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던 甲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소정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甲은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乙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甲이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5점]

**【문 2】**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甲은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채권자 乙이 압류하였던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한 다음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 甲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5점]

**【문 3】**

甲은 2017. 4. 26. 01:15경 서울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甲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친구 乙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甲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0점]

**【문 4】**

\* 다음 각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각 서술하시오.(특별법 등은 고려하지 않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甲은 A농지를 매수한 후 이 농지에 제조업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2015. 7. 29.경 마치 위 농지에 철구조물 제작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B구청에 허위의 건축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8. 9.경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함으로써 농지보전부담금 4,120만 원을 면제받았다. **[10점]**  
[여기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2. 乙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2015. 8.경 총 3,900리터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15,930리터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A정유회사에 송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정유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세무서 직원으로 하여금 국세 및 지방세를 A정유회사에 환급하게 하였다. **[10점]**

**【문 5】**

甲은, 乙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丙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甲을 보험계약자로,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丙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도과된 이후, 乙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丙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甲이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丙 보험회사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甲의 사기죄의 죄책이 달라지는지에 관하여도 논할 것)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20점]**

**【문 6】**

\* 다음 각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각 서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甲은 A사립고등학교의 학생 B가 학교 외에서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외부의 주관기관 명의로 된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B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A학교에 제출하여 B로 하여금 2017년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봉사활동 및 봉사상 수상경력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 사항에 포함되고, A학교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봉사활동확인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내역 및 시간 등을 기재한 후 학년도 말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연간 봉사실적 누계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학생을 특별활동부에 추천하고, 특별활동부에서 이를 취합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봉사활동시간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심의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봉사상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15점]
2. 乙은 A의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받기 위하여 2017. 3. A에 대한 B회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자발급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A에게 비자면접 때 B회사의 영업부 대리인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연습시켜 A가 비자면접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답하였으며, A의 B회사 재직 여부를 묻는 미국대사관 영사부 직원의 문의 전화에 대하여 자신을 B회사의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A가 위 회사영업부 대리인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이에 미국대사관 담당직원은 A의 비자신청을 수리하였다. [5점]

2021. 4. 17.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 형사소송법

## 【문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16.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 기일에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한 피고인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을 2020. 3. 6.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제2회 공판기일에 사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기일에서 변론준비를 위한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3회 공판기일을 2020. 3. 13.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변호인은 2020. 3. 12. 항소심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불허하였고, 위 고지된 제3회 공판기일에는 변호인만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을 재소환하기 위하여 변론을 연기하면서 제4회 공판기일을 2020. 3. 22.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2.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20. 4. 10.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2020. 4. 10.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5점]**

**【문 2】**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는데, 2019. 1. 2.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2019. 1. 7. 피고인의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아버지는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2019. 1. 18.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인 2019. 2. 7.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9. 2. 8. 피고인을 위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였다.

1.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는바, 그 이유 내지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2. 항소심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문 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폭력조직인 X과 행동대원인 피고인 甲은 2020. 12. 28.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OO번지 OO룸싸롱에서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인 Y과 행동대원인 A, B와 다툼이 벌어져, A의 온몸을 칼로 찔러 복부정맥과열로 인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1. 피고인 甲이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나, 그 범행은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1심 법원에서 피고인 甲의 자백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경우,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는 증거와 그렇지 않은 증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5점]**

**【문 4】**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제1심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에 관하여, 담당재판부가 사건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담당재판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이 사건을 제1심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였다.
- 제1심 단독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른 공판절차 진행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5점]